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2호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020 호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 감 사 실 2
견수령
- 공 고 제 1027 호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노 인 장 애 인 과 33
- 공 고 제 103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간석동 중로 2-137호선)사업 실시계 도 시 재 생 과 36
획(변경) 공고·열람
- 보 건 소 공 고 제 4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39
예정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41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41
예정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4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 식 품 위 생 과 43
리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4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 식 품 위 생 과 44
리 공고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20호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감사계획의 수립·통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조항을 신설하여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안 제7조, 제20조)
-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감사실)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73, FAX 453-20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체감사 처분요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체감사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 : (안 제7조)
-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에 대한 조항 신설 : (안 제16조의 2)
-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 : (안 제25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제17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관·단체·법인”을 “기관·단체·법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받는 국·시·구비 보조단체”를 “받거나 국·시·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③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대상기관에”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감사관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으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감사관이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행정기관에서이미”를 “행정기관에서 이미”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로,
 “활용하여야 한다” 를 “활용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제2항 중 “감사담당자” 를 “사람으”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을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확인서 등의 징구)” 를 “(확인서 등의 요구)” 로 한다.

제14조 중 “피감사기관 등” 을 “감사대상기관 등” 으로, “피감사기관장 및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 이라 한다)” 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를 “감사” 로 하
 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
 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중 “구청장” 을 각각 “감사관” 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감사결과 처분심의회) ①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에 참여한 감사담당자로 구
 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또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를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하여”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을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변상명령서를”을 “변상명령을”로, “보고”를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5호”로, “별지 제5호”를 “별지 제6호”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8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으로부터”를 “제20조에 따라”로, “별지 제8호”를 “별지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를 “제16조의2제4항에도 불

구하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회의”로, “감사결과”를 “감사 및 조사결과”로, “하되,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감사관이 지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회에서 처리한다.

제26조제5항 중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를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을 “재심의 할”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부서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별지 제9호”를 “별지 제10호”로 한다.

제3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그 밖에 유의사항)”을 “(감사 시 유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 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관”을 “상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중”을 “시행중”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제16조의2 관련)

감사결과 처분심의 의결서

1. 의안번호

2. 안 건

3. 심의대상자

※ 신분조치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소 속		직위(급)		성 명	담당업무	비고
행위당시	현재	행위당시	현재			

4. 심의내용

5. 심의요구 및 심의결과

연번	제 목	심의대상자			요구 양정	심의 결과	비고
		소 속	직위(급)	성 명			

※ 심의대상자는 신분조치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소속 및 직위(급)은 현재 기준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23조 관련)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기관(부서)명 :

2. 구 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출사항 :

7. 기 타 :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호 서식〉 (제23조 관련)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7호 서식〉 (제24조제1호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

1. 행 위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2. 범행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4.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8호 서식〉 (제24조제2호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

- 사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9호서식〉 (제25조 관련)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호 번	
2. 소관 부서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관련)

서 약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본인은 년 월 일자로 감사실에 발령 받아 근무를 함에 있어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재직중은 물론 전출 및 퇴직 후에라도 이권의 청탁을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추호라도 사적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 ----- ----- -----.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구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u>동 주민센터</u>	1. ----- ----- -- <u>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u>
2.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u>기관 · 단체 · 법인</u>	2. ----- <u>기관 · 단체 · 법인 등</u>
3. 구청장의 지도 · 감독을 <u>받는 국 · 시 · 구비 보조단체</u>	3. ----- <u>받거나 국 · 시 · 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u>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생략)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때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u>	② <u>“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등을 지휘 · 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u>
<신설>	③ <u>“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u>

제6조(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선택하여 시행하
며,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
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
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훈령·예규 및
고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 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
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
증권의 보관·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

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분에 관한 사항12.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13. 구세 및 세외수입과정에 관
한 사항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장
부에 관한 사항15. 본청과 구 의회사무국·보
건소·동 주민센터 또는 국,
실, 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
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상황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
한 사항17. 민원서류 처리사항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 사항19. 그 밖에 감사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
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

1. ~ 6.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연간감사
계획-----

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 수립-----

----- . <단서 삭제>

③ 감사관-----

-----.

④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감사관이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관은 감사원·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생략)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사전준비)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

행정기관에서 이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
--- 활용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전준비) ① -----

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 7.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확인서 등의 징구) ① ~ ③ (생략)

제14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피감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피감사기관장 및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이라 한다)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10. (생략)

제16조(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

-----.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현지시정) -----

감사대상기관 등-----

----- 감사대상

기관의 장-----

-----.

제15조(감사결과의 보고) -----

-- 감사-----

-----.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감사결과 처분) ① 감사관

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관-----

-----.

제16조의2(감사결과 처분심의회)

①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에 참여한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제17조(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지시, 그 밖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신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또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표창추천) -----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에 대하여 -----

-----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
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
과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보고

2. ~ 4. (생략)

제23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실시 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변상
명령을 -----
 --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외부기관 수검보고) ----

별지 제5호

호 ----- 별지 제6호 ----

제24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

-----.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6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 서식)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재심의 신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1. 별지 제7호
2. 별지 제8호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20조
조에 따라 -----

-- 별지 제9호

② 구청장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회에서 처리한다.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0조(복무수칙 준수)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명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안전행정부,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그 밖에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

--- 감사관-----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복무수칙 준수) ① -----

----- 별지 제10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교육이수) -----
----- 행정안전부-----

-----.

제33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
----- 감사대상기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급자-----
--.

④ ----- 시행중 -----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23조(감사결과 처분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각호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2. 특명, 제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3.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건
 4.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지시·요구된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통보사항의 처분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또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관련 감사담당자등이 된다.

제25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는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결과처분 심의의결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

제8조(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설치 등) 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감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본청 감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⑧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 제17조(감사실무심의회 구성) 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팀장과 감사에 참여한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실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른 징계·징계부가금, 시정요구, 주의요구, 시정요구, 권고, 통보 등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27호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
2. 시 행 자 : 남동구청장
3. 공고기간 : 2022. 5. 18. ~ 2022. 6. 7. (20일간)
4. 의견제출 : 2022. 5. 18. ~ 2022. 6. 7. (20일간)
5.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남동구청 > 소식과 알림 > 고시/공고 > 남동구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라.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7. 설치장소

□ CCTV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장 소	수 량	운영관리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0번길 15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내	7	노인장애인과	

8.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9. 촬영범위 및 시간 :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내 CCTV 24시간 촬영

10. 운영관리 : 남동구(노인장애인과)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 2022. 6. 7일까지 (20일간)

나. 제 출 처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팩스 : 032)453-585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12. 문의사항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32)453-2522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간석동 중로 2-1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간석동 중로 2-137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남 동 구 청 장**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간석동 중[국] 2-137 가감속 차로공사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A=441.6㎡
- 변경: A=1,489.7㎡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도기산, 오민석

○ 주소

- 도기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24

- 오민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72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별첨] 용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간석동	3-9	전	7,628.0	128.7	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90번길 15	산곡2, 4동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24번길1(산곡동)	근저당권자	
변경					132	오**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72번길 89			지상권자	
2	간석동	3-12	도	5,931.7	312.9	남동구청	-	-	-	-	-
변경				1,357.7							
합 계				13,559.7	441.6						
					1489.7						

지장물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간석동	3-12	수목	벗나무	주	1	
2			소화전	-	EA	1	
3			표지판	1,200×1,600×60	EA	1	
4			한전주	8721X011	EA	1	
5			체신주	8721X011	EA	2	LG U+
				-			-
6			가로등	만월로 좌-01~04	EA	4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5. 27.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5. 12. ~ 2022. 5. 2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식 품 운반업	2003 -0200064	연수 종합상사	문**	인천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4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2-11	2022-05-27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5. 26.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년 5월 1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5. 30.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5. 13. ~ 2022. 5. 2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 반 음식점	2020 -0202482	미담상회	미담상회 주식회사 문**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751번길 56, 1층일부(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6-18	2022-05-30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5. 27.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년 5월 13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05. 16.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05. 16. ~ 2022. 05. 3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16-0200068	지구라운지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36, 1층 111호 (논현동, 라마다인천호텔)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4-15	2022-05-16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2년 5월 1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05. 18.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05. 18. ~ 2022. 06. 01. (15일간)
5. 직권말소 업소 내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 반 음식점	2018-0202806	인어공주 생일상회집	신**	선수촌공원로 9, 1층 115호, 116호, 117호(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4-11	2022-05-18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년 5월 1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